

#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박찬대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7914
--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17. 7. 11.

발 의 자 : 박찬대 · 김해영 · 남인순  
장정숙 · 김병욱 · 박선숙  
박 정 · 윤관석 · 김영진  
신창현 · 김정우 · 전혜숙  
의원(12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

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유공자 단체의 운영과 복지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면, 물품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양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그러나 조문의 모호함으로 인하여 당초 무상을 전제로 했던 ‘양여’가 유상으로도 제공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발생한 바 있음.

이와 관련하여 법제처는 ‘양여’는 대가를 받고 소유권을 이전하는 ‘매각’과 달리, 매각되지 않거나 매각하는 것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불리한 물품의 소유권을 ‘대가를 받지 않고 이전’하는 행위로서 ‘무상’을 전제로 한 개념이라고 지적하고, 국가보훈처에 ‘양여의 개념을 무상을 전제로 한 것’으로 명확하게 하도록 법령정비의견을 통보한 바 있음.

이에, 현행법에 규정된 ‘양여’의 용어를 무상을 전제로 한 것으로 명확히 정비하려는 것임(안 제13조의2제2항).

법률 제 호

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의2제2항 중 “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양여할 수 있다”  
를 “무상으로 양여하거나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”로 한  
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